

# 강원관광대학 외국인강사 임용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외국인 강사를 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) 외국인이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제 3 조 (직명)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강사는 시간강사의 신분으로 한다.

제 4 조 (자격) 외국인 강사는 임용계획에 따라 학장이 정하는 비자이상을 소지한 자로 한다.

제 5 조 (임용) ① 교무처는 접수된 외국인 강사의 임용 계획을 학장에게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임용한다.

② 외국인 강사의 선발 및 절차는 추천 혹은 공개전형으로 하되 계약제로 한다.

제 6 조 (기간)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재계약 할 수 있다.

제 7 조 (보수) 외국인 강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근무의 내용과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제 8 조 (제출서류) 외국인 강사는 본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임용계약) 외국인 강사는 개별적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용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